

높은뜻 하늘교회 선거관리 규정

2014. 7. 27 제정
2016. 4. 25 개정
2018. 4. 11 개정
2019. 6.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높은뜻하늘교회(이하 “본 교회”)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위임·재신임에 관한 사항과 장로·집사·권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교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출된 장로·집사·권사의 성실한 임직과 봉사를 촉진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은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인”이라 함은 정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거권”이라 함은 본 교회 목사의 청빙·위임·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와 장로·집사·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피선거권”이라 함은 본 교회 장로·집사·권사 선거에서 입후보하여 그 직에 선출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효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본 교회가 속한 총회의 헌법과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장로·집사·권사의 선출 및 임직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의결방법 등)

- ① 장로·집사·권사 선거의 원만하고 원활한 관리 및 진행 등을 위하여 본 교회 당회 직속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당회는 선거공고일 4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해 장로·집사·권사 선거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 해산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당회가 교인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의무)

-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에는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은 분과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분과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의 총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집행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선거결과보고서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거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연명 날인하여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공고 내용
2. 당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 피선거인 확정을 위해 정한 추가적인 자격요건
3. 선거인 명부, 피선거인 명부
4. 선거인 명부 및 피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및 그 처리 결과
5. 분과위원회 구성 내역
6. 선거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7. 선거운동 위반행위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8. 투표·개표의 준비 및 실시 경과
9. 제1차 투표 및 제2차 투표의 개표 결과 및 최종 선출 결과
10. 기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인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만18세 이상인 자
 3. 선거 공고일로부터 4주 전까지 정관 제7조에 따른 교인이 되어 선고 공고일 현재 그 교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자
 4.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본 교회의 교역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자가 된다.

제9조(피선거권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인은 장로 피선거권자가 된다. 단, 당회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장로 피선거권자의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7년을 경과한 자
 2. 만4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
 3. 선거공고일로부터 3년 이전에 정관 제7조에 따른 본 교회 교인이 되어 선거공고일까지 그 교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인은 집사 피선거권자가 된다. 단, 당회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이 경과한 자
 2. 만 3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남자
 3. 선거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정관 제7조에 따른 본 교회 교인이 되어 선거공고일까지 그 교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인은 권사 피선거권자가 된다. 단, 당회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이 경과한 자
 2. 만 3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여자
 3. 선거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정관 제7조에 따른 본 교회 교인이 되어 선거공고일까지 그 교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4.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④ 타 교회에서 임명받은 집사, 권사가 본 교회에서 집사, 권사 피선거권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본 교회에서 치리 중에 있는 자
2.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1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제26조 이하의 책벌사항이 있는 자
2. 제2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자
3. 본 교회의 교역자 및 교회 사무직원
4. 민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7. 총회 헌법 제2편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이 경과된 자

제3절 선거의 절차와 방법

제12조(선거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차 투표실시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선거일(1차 투표일, 2차 투표일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2. 투표장소 및 투표시간
 3. 투표방법
 4. 당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장로·집사·권사의 숫자(이하 “선출예정인원”이라 한다)
 5. 기타 투표에 관한 사항
- ② 당회는 선거공고일 1주 전까지 당해 선거의 선출예정인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거공고는 교회주보,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13조(선거인 명부, 피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배포)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와 동시에 선거인 명부와 피선거인 명부를 선거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 및 피선거인 중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구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선거인 명부 및 피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회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선거인 명부, 피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 및 수정)

- ① 선거인 명부 및 피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는 본인의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 자격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 자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경우, 그 이의 제기자는 이에 불복하여 당회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당회는 제4항에 따른 항고에 대해 투표일 전날까지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해 이의 제기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의 수용,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각, 제5항의 항고에 대한 판단 결과를 즉시 이의 제기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인 명부, 피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전날까지 최종 수정할 수 있으며, 당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확정한다. 선거인 명부, 피선거인 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선거인 명부, 피선거인 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피선거인으로 최종 확정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1차 투표 이전에 그 피선거인 지위에서 사퇴할 수 없다.

제15조(선거운동금지 및 공정선거)

- ① 선거공고일로부터 최종 투표 완료시(이하 “선거기간”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 또는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통신수단, 서명날인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선거기간에는 예배 등 교회의 상시적인 활동 또는 교회력에 따른 행사나 전년도에 미리 계획한 행사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서 월례회, 단합대회, 친목회, 야유회, MT
 2.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해 금지되는 모임 및 행사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중지명령을 받는 경우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혜자가 2회 이상 혜택을 입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반사실을 교인들에게 공지하되 반드시 투표 당일 투표소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하며,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절 투표

제16조 (투표의 원칙)

- ① 투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방식으로 한다.
- ② 선거인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등 투표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구도 선거인에게 투표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지 못한다.
- ③ 선거인이 신체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표 또는 기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 1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1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제17조(본인확인 등)

- ① 선거인은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 그밖에 투표참관인(이하 “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임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 등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본 교회가 사전에 지정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 없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 ③ 선거일에 선거인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선거 당일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본인이 제시한 신분증 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역자가 선거인 명부의 선거인과 해당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역자 및 선거관리위원 등은 위 사실을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의 방법)

- ① 투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이루어진다.
- ② 1차 투표는 기표소에 비치된 피선거인 명부 중에서 선출예정인원에 달하는 수 이하의 이름을 기재하거나『人』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피선거권자 중 동명이인이 있어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인 명부에 구별하여 표기한 것이 있으면 그 구별한 표기를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 ③ 2차 투표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명단 옆에 마련된 공란에 최소 1개 이상 최대 선출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수 이하의 『人』를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투표소의 설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를 위하여 다음의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확인을 위한 선거인명부와의 대조 및 투표용지의 교부 등에 필요한 시설
3. 기표소
4. 투표함
5.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제20조(선거인에 대한 피선거인 정보 제공)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일에 당회에 의해 최종 확정된 피선거인 명부를 기표소에 비치해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일에 피선거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름, 소속 셀, 부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표소에 비치하거나 투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일에 1차 투표에 의하여 2차 투표 피선거인으로 선출된 자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 소속 셀, 부서, 1차 투표 득표순위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표소에 비치하거나 투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1차 투표 용지와 2차 투표 용지를 각각 구별되게 제작·사용한다.

제22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선거공고 시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2차 투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일 다음 날까지 1차 투표에서 다수의 득표를 한 순서에 따라 2차 투표 피선거인을 결정하여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2차 투표 피선거인이 될 수 있는 최소득표율 기준은 장로선거의 경우 10% 이상, 집사·권사 선거의 경우 5% 이상으로 한다. 단, 선거공고 시 최소득표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회에 보고하는 2차 투표 피선거인의 수는 선출예정인원의 1.5배수 미만이어야 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피선거인이 발생하여 당회에 보고하려는 2차 투표 피선거인의 수가 선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령 순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 제7조에 따른 교인의 자격을 먼저 취득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2차 투표 피선거인 보고 시 차 순위 득표 순으로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2차 투표 피선거인 및 예비후보자 선정통보)

- ① 당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차 투표 피선거인 및 예비후보자에게 2차 투표 피선거인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책벌사항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1차 투표일 다음날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2차 투표 피선거인 또는 예비후보자 중 2차 투표 피선거인 지위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당회에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퇴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제25조(책벌사항 확인)

- ① 당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2차 투표 피선거인과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7년 이내에 제26조에서 정한 책벌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책벌사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그 피선거인 자격 또는 예비후보자 자격의 박탈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2차 투표 피선거인 및 예비후보자는 당회의 책벌사항 확인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사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당회의 책벌사항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선거 실시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책벌사항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책벌사항의 범위)

제25조에 따른 책벌사항 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편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책벌 중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견책
2. 근신

3. 수찬정지(유기 및 무기)
4. 시무정지(유기 및 무기)
5. 시무해임
6. 정직
7. 면직
8. 출교

제27조 (책벌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 ①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책벌사항 확인 결과 타 교회에서 책벌사항이 있음이 확인된 2차 투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그 확인된 책벌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당회에 해명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 받은 책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회는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에 따른 2차 투표 피선거인 및 예비후보자에 대한 책벌사항 확인과 이의제기에 정당성 판단 등을 통해 2차 투표 피선거인 자격 또는 예비후보자 자격 박탈여부를 의결한다.

제28조(2차 투표 피선거인의 최종 확정)

- ① 제23조에 따른 2차 투표 피선거인이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사퇴를 하거나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 1차 투표 득표수가 많은 자 순서로 추가적으로 2차 투표 피선거인이 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선거인 승계과정을 거쳐 1차 투표후 5일 이내에 장로·집사·권사 선출예정인원의 1.5배수 미만에 해당하는 2차 투표 피선거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5절 개표

제29조(개표소의 설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일 전일 및 2차 투표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개표참관인, 개표위원의 좌석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표개시)

개표는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된 후 위원장의 개시 선언에 따라 실시한다.

제31조(개표절차)

- ① 개표는 위원장이 지명한 개표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자 이외의 자는 개표가 완료되어 개표결과가 공표되기 이전까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무효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이를 전부 무효로 한다.
 1. 기재 또는 기표가 없는 1차 투표 또는 2차 투표를 투표용지
 2. 1차 투표에서 선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기재한 투표용지
 3. 2차 투표에서 선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투표용지
 4. 2차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人』이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에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1. 1차 투표에서 이름을 기명하였으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 1차 투표에서 기명된 이름이 틀린 경우
 3. 1차 투표에서 이름을 기명하였으나 동명이인을 피선거인 명부에 구별하여 표기한 방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2차 투표에서 하나의 『人』표가 2명의 이름에 걸쳐 있는 경우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원 초과 기재여부 및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인원 초과 기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2항에 따라 부분무효로 처리하는 이름도 전체 인원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투표의 무효표 여부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3조(개표결과의 공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의 개표가 완료된 다음날까지 본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투표자, 투표율, 2차 투표 대상자의 득표 수 및 성명 등을 포함한 1차 투표 결과 등을 공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 결과공표에 포함된 2차 투표 대상자는 제25조로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책별사항 확인 및 제28조에 따른 피선거인 승계로 인해 변경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투표의 개표가 완료된 직후 제36조에 따른 공고 시 본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투표자, 투표율, 장로·집사·권사로 확정·공고된 자가 취득한 득표수 등을 함께 공고한다.

제34조(개표결과에 대한 이의)

1차 투표 및 2차 투표의 개표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선거인은 제33조에 따른 개표결과 공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소명하여 당회에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는 해당 사안에 따른 재검표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부를 심의·의결한다.

제35조(투표용지의 보관)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선거의 투표용지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한 날로부터 1년간 본 교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절 장로·집사·권사의 확정

제36조(장로·집사·권사의 확정 및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또는 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자를 장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를 집사 및 권사로 정하여, 2차 투표 실시일의 다음 주일에 공고한다.
- ② 2차 투표에서 장로·집사·권사로 선출된 자가 없거나, 선출된 인원이 선출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 2차 투표에서 장로 피선거인으로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해 선거의 장로 선출예정인원을 초과하거나, 집사·권사 피선거인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해 선거의 집사·권사 선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득표 수 순으로 각각 선출예정인원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만 장로·집사·권사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일한 득표를 한 자들이 있으면 제23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연령, 교인신분 취득 순으로 선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이 충족하여 각각 장로·집사·권사로 정한다.
- ④ 제32조에 따른 무효표는 제1항에 따른 총 투표수에 산입한다.

제7절 장로·집사·권사의 신분에 관한 사항

제37조(장로·집사·권사 선정 및 공고 취소)

당회는 2차 투표일 이후부터 장로·집사·권사로 임직하기 전까지 장로·집사·권사로 선정 및 공고된 자(이하 각각 “피택장로” “피택집사”, “피택권사”라 한다)의 책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로·집사·권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피택장로·집사·권사의 임직 의무)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피택장로가 된 자는 정관 제11조에 따른 당회주관 교육 수강, 노회 장로고시 응시 및 합격 등 장로임직을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하여 피택집사 또는 피택권사가 된 자는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당회의 교육을 수강하는 등 집사 또는 권사로 임직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의하여 피택장로·피택집사·피택권사가 된 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교회에서 정한 임직일정에 따른 임직일에 임직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임직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가 재차 정한 차기 임직일에도 임직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그 자의 피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장로·집사·권사의 성실의무 및 임기)

- ① 이 규정에 따라 장로·집사·권사로 임직한 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교회를 떠나 장기간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교회에 이를 신고하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장로·집사·권사로 임직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임직에 따른 권리가 정지되며, 1년을 경과하면 당회의 의결로 그 임직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직에 따른 권리가 정지된 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그 돌아온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의결로 임직에 따른 권리를 복권시킬 수 있다.
- ④ 장로·집사·권사로 임직한 자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기간이 임기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당회는 그 임직사

- 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속한 교회 복귀를 촉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교회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의결로 그 자의 임직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규정한 장로·집사·권사로 임직한 자가 교회를 떠나있는 기간과 교회로 돌아온 후 복권되기까지의 기간은 정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장로의 임기, 정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집사와 권사의 임기에 산입한다.

제3장 목사의 청빙·위임 및 재신임

제40조(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및 청빙후보 결정)

- ① 담임목사의 사임, 재신임 부결 및 결원 등으로 인해 청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회는 지체없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빙위원회 위원의 수는 당회원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교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인선하여야 한다.
- ③ 당회는 당회원인 위원 중 1인을 청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④ 청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청빙위원회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⑤ 청빙위원회는 광고를 통한 모집, 추천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담임목사 청빙후보를 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청빙후보자 1인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청빙위원회는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청빙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최종 청빙후보자 1인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빙의 의결)

- ① 당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청빙후보자에 대한 청빙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 그 청빙후보자에 대한 청빙을 부결한 경우,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모집한 청빙후보 전체명단 및 의결경위를 청취하고 청빙위원회로 하여금 기 모집한 청빙후보 중 다른 1인을 청빙후보로 보고하게 하거나 제40조 제5항 이하의 청빙절차를 재차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당회가 제1항에 따른 청빙을 가결한 경우에는 담임목사 청빙투표를 위한 제직회와 공동의회 소집을 의결하고 교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당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청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청빙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있는 이 규정 조항을 준용한다.
 1.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제7조(선거결과보고서)
 3. 제8조(선거권자)
 4. 제10조(선거권이 없는 자)

5. 제13조와 제14조 중 선거권에 관한 부분
6. 제16조와 제17조(투표에 관한 일반사항)
7. 제19조(투표소)
8. 제22조(투표시간)
9. 제29조로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개표에 관한 사항)

제42조(담임목사의 위임)

- 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담임목사를 청빙하였을 경우 당회는 그 청빙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담임목사의 위임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위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담임목사 재신임)

- ① 당회는 담임목사의 재임기간 6년이 만료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동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 개최일을 미리 의결하여 교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당회는 담임목사 재신임을 위한 투표를 원만하고 질서있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의회 개최 4주 전까지 담임목사 재신임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관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담임목사 재신임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담임목사 재신임투표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투·개표 전반에 대해서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4조(재신임이 된 담임목사)

- ① 당회는 제43조에 따른 공동의회가 재신임을 의결한 담임목사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재임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서 안식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당회는 제1항에 따라 안식년을 갖는 담임목사의 재임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본 교회의 높은뜻 정신에 따른 목회실천에 부합하는 인물로 대리당회장을 선정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안식년 임기로 한다.
- ③ 당회가 제2항에 따른 대리당회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당회의 권한 위임과 관계없이 대리당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1. 당회에서의 의결권(단, 본 교회 부목사 중 대리당회장을 선정한 경우 그 대리당회장은 교회가 전년도에 미리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른 일반적인 교회운영에 관한 사안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회 헌법 제2편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로·집사·권사 임직권
 3. 총회 헌법 제2편 제68조 제7항에 따른 권징권
 4. 총회 헌법 제2편 제68조 제8항에 따른 부동산관리권

제45조(담임목사 재신임이 되지 아니한 경우)

-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재신임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회는 정관 제10조 제6항에 따른 이임준비금을 정하여 지원하는 등 해당 담임목사의

원만한 이임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임준비금이 지원되는 기간에 한하여 해당 담임목사의 관사에 대한 지원 등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단, 교회에서 이 기간 내에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였을 경우에는 이임준비금 이외의 지원은 새로운 담임목사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46조(담임목사의 당회의결권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임목사의 당회의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제43조에 따른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결과 재신임이 부결되어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할 때 당회가 행하는 의결
2. 담임목사 당사자의 위임여부를 결정하고자 제42조에 따라 당회가 행하는 의결
3. 담임목사 당사자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고자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표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투·개표에 관하여 당회가 행하는 의결
4. 담임목사 당사자의 안식년 기간 등을 결정하고자 제44조 제1항에 따라 당회가 행하는 의결
5. 담임목사 당사자의 재신임이 부결되어 제45조에 따른 이임준비금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당회가 행하는 의결

제47조(부목사의 청빙 및 재임)

- ① 부목사의 청빙을 위한 당회의 의결과 제직회 의결을 위한 후보자 선정 및 투·개표에 대해서는 그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당회에서 정한다.
- ② 부목사의 재임은 당회의 의결로써 한다. 그 재임을 부결한 경우 당회는 해당 부목사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임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당회가 정식 구성되기 전까지 이 규정의 당회는 한시적으로 '제직부서장회의'가 이를 대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6.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당회가 담임목사 재신임 여부 결정을 위해 구 규정에 따라 추진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